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629호 2023. 5. 17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3-46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여량정수장) 실시계획
인가 고시.....1
- 정선군 고시 제2023-47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.....3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3-568호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정선군 조례
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.....8
- 정선군 공고 제2023-604호 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안.....14
- 정선군 공고 제2023-605호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
지역대응시행계획 주민의견수렴 공고.....20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3-46호

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:여량정수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

정선군 고시 제2010-96호(2010. 7. 9.)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4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02-1 외 4필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
- 2) 명 칭 :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규 모	금회시행	
수도공급설비	여량정수장	A=5,948㎡	A=5,912㎡(Q=1,000㎥/일)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● 토지조서

연번	위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여량면 유천리	202-1	수도	3,722	3,722	정선군				
2	여량면 유천리	202-2	수도	313	313	정선군				
3	여량면 유천리	209	묘	575	575	정선군				
4	여량면 유천리	207-1	수도	119	119	정선군				
5	여량면 유천리	208	전	1,183	1,183	정선군				
계				5,912	5,912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3-47호

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9일

정 선 군 수

1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- 여량도시지역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폐지	소로	1	7	10	집산 도로	285	중로3-1 여량리 90-3전	중로3-2 여량리 372-91전	일반 도로	정선고제43호 (03.05.09)	실효

- 북평도시지역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2	6	15	보조 간선 도로	456	중로1-1 북평리 811-2답	중로2-1 북평리 764전	일반 도로	정선고제42호 (03.05.09)	
변경	중로	2	6	15	보조 간선 도로	192	북평리 799-31답	중로2-1 북평리 764전	일반 도로	정선고제42호 (03.05.09)	미집행 구간 실효
폐지	소로	2	16	8	국지 도로	470	중로1-2 북평리 산189-6임	북평리 242-21철	일반 도로	정선고제42호 (03.05.09)	실효

2. 실효일자 : 2023. 5. 9.

3. 실효사유 :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

4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5.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과(033-560-213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
니다.

□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지형도면 : 여량도시지역(소로1-7호선)

○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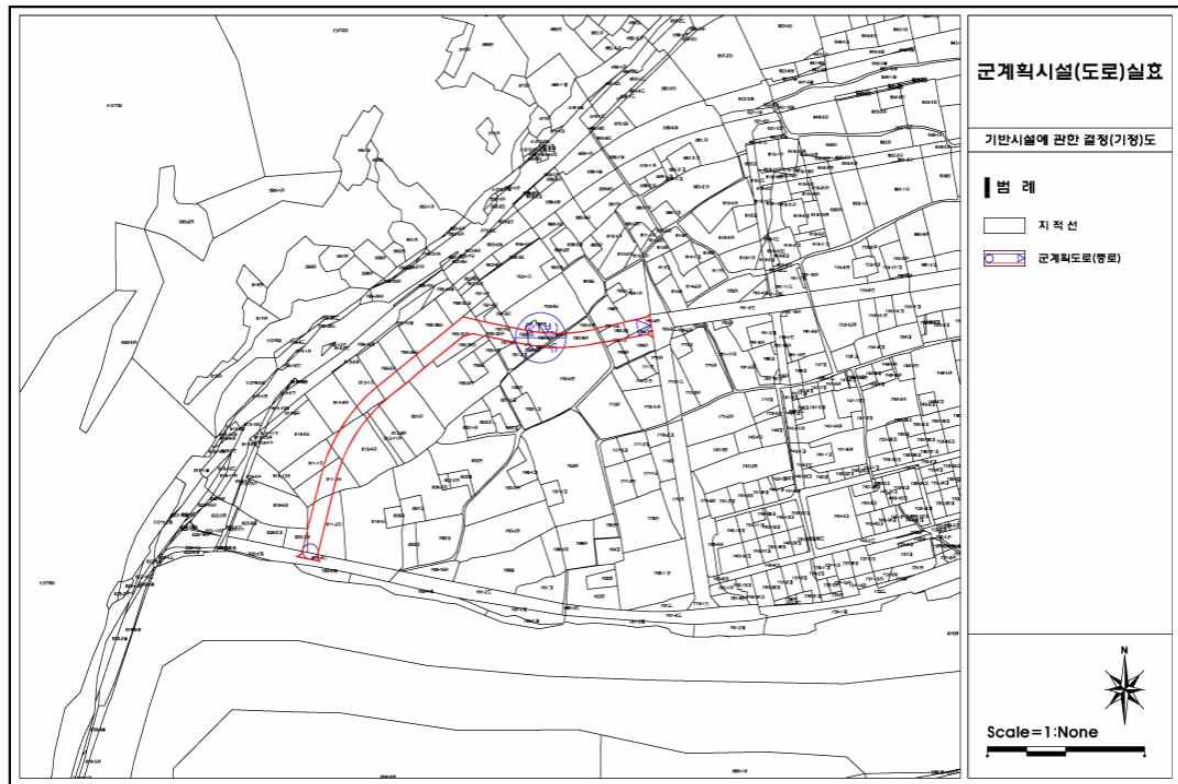


○ 변경



□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지형도면 : 북평도시지역(중로2-6호선)

○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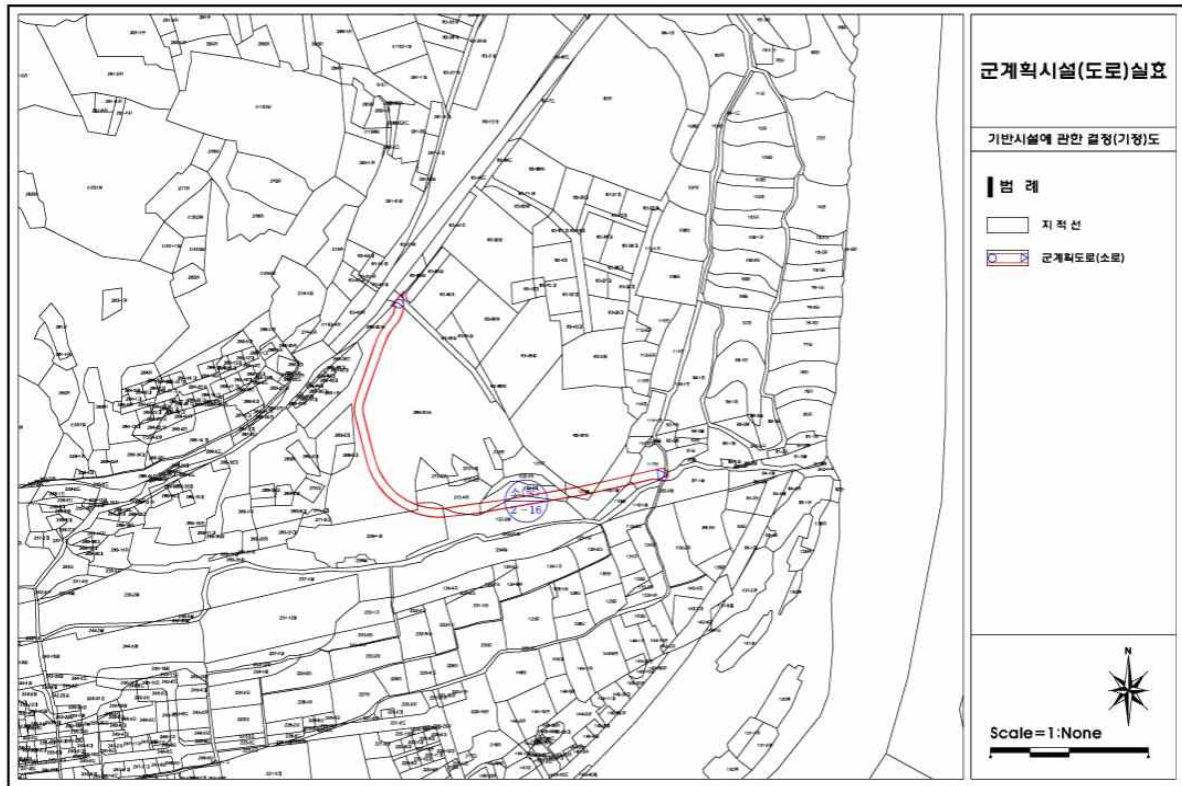


○ 변경



□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지형도면 : 북평도시지역(소로2-16호선)

○ 기정



○ 변경

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3-568호

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8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2021. 1. 1. 조직개편 이후 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국 소속 위원회 중 “부군수” 임명이 임의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소속 국장으로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국 소속 위원회 중 “부군수” 임명이 임의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을 소속국장으로 정비 및 임명

3. 일괄개정조례안 : “별첨”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“별첨”

5. 입법예고 : 2023. 5. 8. ~ 2023. 5. 18. (10일)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제출기일 : 2023년 5월 18일 까지

다. 제출기관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기획관실
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216), 팩스(033-560-2592)

- E-mail : hyeo1201@korea.kr, 홈페이지 :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- 주 소 : (2316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
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국 단위 소속부서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시설국장이”로 한다.

제2조(「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시설국장이”로 한다.

제3조(「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시설국장이”로 한다.

제4조(「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시설국장이”로 한다.

제5조(「정선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시설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1조(「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5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. ③ · ④ (생략)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시설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1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 다. ③ · ④ (생략)	제11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시설국장이</u>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「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2조(구성) ①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 다)의 단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단장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(이하 ‘이사 장’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 <u>시설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「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 위원장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 무 담당과장이 되며, 당연직 위 원은 안전과장으로 한다. ③·④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시설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「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	제8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시설국장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정선군 공고 제2023-604호

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안

“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안”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5월 15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및 「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칙의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

2. 주요내용

「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」을 폐지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0일(5일간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총무행정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의견

《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》

○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

○ 전 화 : 033 - 560 - 2233

○ F A X : 033 - 560 - 2590

○ E-mail : publicljc@korea.kr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정선군 규칙 제 호

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안

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선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폐지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규칙 폐지안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

제4조(비용추계 제외대상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규칙 폐지안으로 비용추계 없음

4. 작성자

총무행정관 전 증 표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1조의2(근무기강의 확립) ①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, 출퇴근,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, 당직, 휴가,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
2.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)의 후속조치
3.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.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.
4.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③ 공무원(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집단·연명(聯名)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·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의2(출장공무원)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(이하 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,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.

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,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,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휴가의 종류)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(公暇)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.

□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제4조(근무기강확립)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·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정선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
2. 직제규칙과 담당관·과·소 규칙에서 정한 국장·담당관·과장·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
3. 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·담당관·과장·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
4.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
5. 지방세 부과,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인 자
6.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·담당관·과장·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사무의 인계인수)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"별표"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 이 있을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(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,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③같은 담당관·과·소 내에서 상·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3-605호

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
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 주민의견수렴 공고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『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』 및 『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』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16일

정 선 군 수

1. 『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』 및 『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』 : 붙임 요약서 참고
※ 계획 원본은 정선군청 기획관실(기획팀) 비치 및 열람 가능
2. 의견 제출기간 : 2023. 5. 16. ~ 2023. 5. 29.(14일간)
3. 의견제출방법
 - 1) 제출방법 : 붙임 서식에 의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(공문)제출
 - 2) 제출내용 :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
4. 기타 문의 사항은 정선군 기획관실(033-560-22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
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 주민의견서

1. 의견 제출자

- 성 명 :
○ 연락처 :
○ 소속단체(회사)명 :

2. 의견내용

기본계획(시행계획)내용	오류 또는 누락사항	관련근거

3. 기타 참고사항

※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